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	--

제출일자 2020. . .

제 출 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의 주민부담률을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시기를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2021년 1월 1일로 수정하였음.

2. 수정 주요내용

- 시행일 수정 (당초: 2020년 7월 1일→변경: 2021년 1월 1일)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 관련 별표1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 관련 별표1의 개정규정은 <u>2020년 7월 1일</u>부터 적용한다.	부 칙 ----- -----. ----- <u>2021년 1월 1일</u> -----.